

# 김해 삼계 서히스타힐스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10.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남 김해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김해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김해시를 포함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 공급합니다. 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김해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자(2018.10.10 이전거주)가 우선하며, 1년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2호,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http://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http://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ghsstarhills1123>)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8.02.09 시행)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그 실제 거래가격(공동주택 공급가액, 발코니 확장 금액 등 옵션비용)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대상입니다(외국인 계약을 포함).

■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br>노부모부양)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 정 | 10월 15일(화)                                                                                                                        | 10월 16일(수)                                                                                                                                                                                                       | 10월 17일(목)                                                                                                                                                                                                       | 10월 23일(수)                                                                                                                                               | 11월 04일(월) ~ 11월 06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개별조회<br>(www.ap2you.com<br>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주택 홍보관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www.ap2you.com)</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www.ap2you.com</li> <li>- 모바일 : APT2you 앱</li> <li>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www.kbstar.com</li> <li>-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www.ap2you.com</li> <li>- 모바일 : APT2you 앱</li> <li>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www.kbstar.com</li> <li>-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양사무소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li> <li>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li> <li>- PC :www.ap2you.com</li> <li>- 모바일 : APT2you 앱</li> </ul> | 김해시 삼계동 1545번지<br>삼계 서희스타힐스 커뮤니티센터 |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남 김해시 공동주택과 - 31795호(2019-10-1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54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29층, 주 16개동, 총 1,123세대 중 일반공급 325세대(특별공급 150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19년 11월 예정(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br>(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br>지분 | 총공<br>급<br>세대<br>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일반분양<br>세대수 | 저층<br>우선<br>배정<br>세대수 |
|----------|--------------|------------------|-------|-------------------------|----------------|----------|------------------------|----------|-----------------|--------------------|----------|-----------|----------|-----------|-----|-------------|-----------------------|
|          |              |                  |       | 주거<br>전용<br>면적          | 주거<br>공용<br>면적 | 소계       |                        |          |                 |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계   |             |                       |
| 민영<br>주택 | 2019000902-1 | 59.9793A         | 59A   | 59.9793                 | 21.6549        | 81.6342  | 28.3322                | 109.9664 | 35.8656         | 32                 | 4        | 4         | 6        | 1         | 15  | 17          | 7                     |
|          | 2019000902-2 | 59.9738B         | 59B   | 59.9738                 | 22.7312        | 82.7050  | 28.3295                | 111.0345 | 35.8624         | 41                 | 5        | 5         | 9        | 2         | 21  | 20          | 6                     |
|          | 2019000902-3 | 59.9633C         | 59C   | 59.9633                 | 21.6072        | 81.5705  | 28.3246                | 109.8951 | 35.8561         | 80                 | 8        | 8         | 16       | 3         | 35  | 45          | 7                     |
|          | 2019000902-4 | 74.9527A         | 74A   | 74.9527                 | 26.0067        | 100.9594 | 35.4051                | 136.3645 | 44.8193         | 68                 | 7        | 7         | 14       | 3         | 31  | 37          | 5                     |
|          | 2019000902-5 | 74.4150B         | 74B   | 74.4150                 | 26.7252        | 101.1402 | 35.1512                | 136.2914 | 44.4977         | 24                 | 3        | 3         | 5        | 1         | 12  | 12          | 3                     |
|          | 2019000902-6 | 84.9828          | 84    | 84.9828                 | 29.3081        | 114.2909 | 40.1430                | 154.4339 | 50.8169         | 80                 | 8        | 8         | 16       | 3         | 35  | 45          | 4                     |
| 합계       |              |                  |       |                         |                |          |                        |          |                 | 325                | 35       | 35        | 66       | 13        | 149 | 176         | 32                    |

■ 주택형 표시안내

|                 |         |         |         |         |         |         |
|-----------------|---------|---------|---------|---------|---------|---------|
| 공고상(청약시)<br>주택형 | 주택형     |         |         |         |         |         |
|                 | 59.9793 | 59.9738 | 59.9633 | 74.9527 | 74.4150 | 84.9828 |
| 약식표기            | 59A     | 59B     | 59C     | 74A     | 74B     | 84      |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분양사무소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김해삼계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단위 : m<sup>2</sup>, 원)

| 주택형 | 공급<br>세대수 | 층<br>구분 | 해당<br>세대수 | 분양가격       |             |             | 계약금(10%)   | 잔 금(9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9A | 32        | 1층      | 2         | 42,710,000 | 215,690,000 | 258,400,000 | 25,840,000 | 232,560,000 |
|     |           | 2층      | 2         | 42,710,000 | 221,190,000 | 263,900,000 | 26,390,000 | 237,510,000 |
|     |           | 3층      | 2         | 42,710,000 | 226,590,000 | 269,300,000 | 26,930,000 | 242,370,000 |
|     |           | 4~10층   | 10        | 42,710,000 | 229,290,000 | 272,000,000 | 27,200,000 | 244,800,000 |
|     |           | 11~15   | 8         | 42,710,000 | 232,090,000 | 274,800,000 | 27,480,000 | 247,320,000 |
|     |           | 16층이상   | 8         | 42,710,000 | 234,790,000 | 277,500,000 | 27,750,000 | 249,750,000 |
| 59B | 41        | 1층      | 1         | 42,710,000 | 219,090,000 | 261,800,000 | 26,180,000 | 235,620,000 |
|     |           | 2층      | 2         | 42,710,000 | 224,590,000 | 267,300,000 | 26,730,000 | 240,570,000 |
|     |           | 3층      | 3         | 42,710,000 | 230,090,000 | 272,800,000 | 27,280,000 | 245,520,000 |
|     |           | 4~10층   | 12        | 42,710,000 | 232,890,000 | 275,600,000 | 27,560,000 | 248,040,000 |
|     |           | 11~15   | 9         | 42,710,000 | 235,690,000 | 278,400,000 | 27,840,000 | 250,560,000 |
|     |           | 16층이상   | 14        | 42,710,000 | 238,390,000 | 281,100,000 | 28,110,000 | 252,990,000 |
| 59C | 80        | 1층      | 1         | 42,700,000 | 215,500,000 | 258,200,000 | 25,820,000 | 232,380,000 |
|     |           | 2층      | 3         | 42,700,000 | 221,000,000 | 263,700,000 | 26,370,000 | 237,330,000 |
|     |           | 3층      | 3         | 42,700,000 | 226,400,000 | 269,100,000 | 26,910,000 | 242,190,000 |
|     |           | 4~10층   | 18        | 42,700,000 | 229,100,000 | 271,800,000 | 27,180,000 | 244,620,000 |
|     |           | 11~15   | 16        | 42,700,000 | 231,800,000 | 274,500,000 | 27,450,000 | 247,050,000 |
|     |           | 16층이상   | 39        | 42,700,000 | 234,600,000 | 277,300,000 | 27,730,000 | 249,570,000 |
| 74A | 68        | 1층      | 1         | 53,370,000 | 263,130,000 | 316,500,000 | 31,650,000 | 284,850,000 |
|     |           | 2층      | 2         | 53,370,000 | 269,730,000 | 323,100,000 | 32,310,000 | 290,790,000 |
|     |           | 3층      | 2         | 53,370,000 | 276,430,000 | 329,800,000 | 32,980,000 | 296,820,000 |
|     |           | 4~10층   | 18        | 53,370,000 | 279,730,000 | 333,100,000 | 33,310,000 | 299,790,000 |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 11~15 | 12     | 53,370,000 | 283,130,000 | 336,500,000 | 33,650,000 | 302,850,000 |
|     |        | 16층이상 | 33     | 53,370,000 | 286,430,000 | 339,800,000 | 33,980,000 | 305,820,000 |
| 74B | 24     | 1층    | 1      | 52,990,000 | 264,010,000 | 317,000,000 | 31,700,000 | 285,300,000 |
|     |        | 2층    | 2      | 52,990,000 | 270,710,000 | 323,700,000 | 32,370,000 | 291,330,000 |
|     |        | 3층    | -      | 52,990,000 | 277,410,000 | 330,400,000 | 33,040,000 | 297,360,000 |
|     |        | 4~10층 | 7      | 52,990,000 | 280,710,000 | 333,700,000 | 33,370,000 | 300,330,000 |
|     |        | 11~15 | 5      | 52,990,000 | 284,110,000 | 337,100,000 | 33,710,000 | 303,390,000 |
|     |        | 16층이상 | 9      | 52,990,000 | 287,410,000 | 340,400,000 | 34,040,000 | 306,360,000 |
| 84  | 80     | 1층    | -      | 60,510,000 | 294,190,000 | 354,700,000 | 35,470,000 | 319,230,000 |
|     |        | 2층    | 2      | 60,510,000 | 301,690,000 | 362,200,000 | 36,220,000 | 325,980,000 |
|     |        | 3층    | 2      | 60,510,000 | 309,190,000 | 369,700,000 | 36,970,000 | 332,730,000 |
|     |        | 4~10층 | 26     | 60,510,000 | 312,890,000 | 373,400,000 | 37,340,000 | 336,060,000 |
|     |        | 11~15 | 16     | 60,510,000 | 316,590,000 | 377,100,000 | 37,710,000 | 339,390,000 |
|     |        | 16층이상 | 34     | 60,510,000 | 320,390,000 | 380,900,000 | 38,090,000 | 342,810,000 |

####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사무소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아파트 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제외)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 필지의 합병 및 분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비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비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이내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을 기준으로 합니다.(필로티,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59A       | 59B | 59C | 74A | 74B | 84 | 합 계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2   | 2   | 2   | 1   | 2  | 10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1   | 2   | 2   | 0   | 2  | 8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1   | 2   | 1   | 1   | 2  | 8   |    |
|               | 장애인            | 1         | 1   | 2   | 2   | 1   | 2  | 9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김해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 4   | 5   | 8   | 7   | 3  | 8   | 3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기준          | 우선공급(75%) | 5   | 7   | 12  | 11  | 4  | 12  | 51 |
|               |                | 일반공급(25%) | 1   | 2   | 4   | 3   | 1  | 4   | 15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2   | 3   | 3   | 1   | 3  | 13  |    |
| 합 계           |                | 15        | 21  | 35  | 31  | 12  | 35 | 149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br>자격요건/<br>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
| 무주택<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li> </ul> |

|                    |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       |       |             |       |       |       |              |       |       |       |              |       |       |         |       |       |         |         |
|--------------------|--------------------------------------------------------------------------------------------------------------------------------------------------------------------------------------------------------------------------------------------------------------------------------------------------------------------------------------------------------------------------------------------------------------------------------------------------------------------------------------------------------------------------------------------------------------------------------------------------------------------------------------------------------------------------------------------------------------------------------------------------------------------------------------------------------------------------------------------------------------------------------------------------------------------------------------------------------------------------------------------------------------------------------------------------------------------------------------------------------------------------------------------------------------------------------------------------------------------------------------------------------------------------------------------------------|---------|------------|-------|-------|-------------|-------|-------|-------|--------------|-------|-------|-------|--------------|-------|-------|---------|-------|-------|---------|---------|
| <p>청약자격<br/>요건</p>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b>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b>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b></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264 703 2163 863"> <thead> <tr> <th>구 분</th> <th>김해시 및 경상남도</th> <th>울산광역시</th> <th>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 구 분     | 김해시 및 경상남도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구 분                | 김해시 및 경상남도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 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             |       |       |       |              |       |       |       |              |       |       |         |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 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상남도보훈지청 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 (1)      | 40   |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4명     | 35 |                                                                                       |
|                  |      |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 (2)      | 15   |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 (3)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 기간 (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

|                  |    |              |    |                                                                                                                                                                                                                                 |
|------------------|----|--------------|----|---------------------------------------------------------------------------------------------------------------------------------------------------------------------------------------------------------------------------------|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67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 공급함(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 제1순위에 우선공급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공급유형                    | 구분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 우선공급<br>(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br>(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br>120%이하           | 5,401,815원<br>~ 6,482,177원 | 6,165,203원<br>~ 7,398,242원 | 6,699,866원<br>~ 8,039,838원 | 7,348,892원<br>~ 8,818,669원 | 7,997,918원<br>~ 9,597,500원  | 8,646,944원<br>~ 10,376,332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br>130%이하           | 6,482,178원<br>~ 7,022,358원 | 7,398,243원<br>~8,014,763원  | 8,039,839원<br>~ 8,709,825원 | 8,818,670원<br>~ 9,553,558원 | 9,597,501원<br>~ 10,397,292원 | 10,376,333원<br>~ 11,241,026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항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제7조 제3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월평균소득은 가구당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소득세 입증 제출 서류                                  |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br>- 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br>(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                       |                                                            |                     |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br>-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 비사업자 확인각서(분양사무소에 비치)                                     | -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1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li> <li>※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경상남도 및(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경상남도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유주택자도 가능)</li> </ul>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 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 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ul> </li> <li>•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 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 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ul> </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함.</li> <li>-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li> </ul> </li> <li>•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li> </ul> <p>※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p> <p>※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ul> |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구분           | 김해시 및 경상남도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모든 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김해시 / 경상남도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1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li>※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li> </ul> |
|      |                            | 2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구분                | 신청자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p> <p>※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주택소유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제외 [제1호 나목 2)에 단서 신설] 다만, 주택(분양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한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포함)에 한함</p>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br>-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br>(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br>※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br>보지 아니한다. |
|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 저축<br>가입기간 | 17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총점               | 84 |               |    |                 |    |                                                                |
| 비고               |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①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②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③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 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당첨일로부터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당첨일로부터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19.10.15(화)<br>(APT2you : 08:00~17:30)<br>(분양사무소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APT2you)<br>-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br>• 사업주체 분양사무소<br>※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분양사무소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 1순위                          | 2019.10.16(수)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br>- PC : www.ap2you.com<br>- 스마트폰 : APT2you 앱<br>•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br>- PC : www.kbstar.com<br>-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      | 2순위                          | 2019.10.17(목) 08:00~17:30                                         |                                             |                                                                                                                                          |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분양사무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br>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br>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br>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br>(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br>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일반<br>(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 해당 기관장의<br>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 다자녀<br>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br>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br>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임신증명 및<br>출산이행각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김해삼계 서히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소에 비치 |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br>19세이상<br>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    |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                  |  |   |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분양사무소에 비치)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분양사무소에 비치)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 인장                    | 대리인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금융결제원(쏘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자격(거주 개시일) 기재 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

| 구분   | 구비사항                                                                                                                                                                                                                                                                                                                                                                                                                                                          |
|------|---------------------------------------------------------------------------------------------------------------------------------------------------------------------------------------------------------------------------------------------------------------------------------------------------------------------------------------------------------------------------------------------------------------------------------------------------------------|
| 일반공급 | <p>본인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li> <li>• 신분증(혹은 운전면허증, 여권/배우자 대리 신청 시는 배우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li>• 주민등록표등본 1통</li> <li>※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 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 가능 하여야 함]</li> </ul>                                                                                            |
|      | <p>제3자 대리 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 방법                                                                                                                                                                                                                                                                                                                                                                                                                                   |
|-----------------------------------|-----------------------------------------------------------------------------------------------------------------------------------------------------------------------------------------------------------------------------------------------------------------------------------------------------------------------------------------------------------------------------------------------------------------------------------------|
| <p><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ul> |

|                            |                                                                                                                                                                                                                                                                                                                                                                                                                                                                                                                                                                                                                                                                                                                                                                                                                                                                                                                                                                                                                                                                                                                                                                                                                                                                                                                                                                         |
|----------------------------|-------------------------------------------------------------------------------------------------------------------------------------------------------------------------------------------------------------------------------------------------------------------------------------------------------------------------------------------------------------------------------------------------------------------------------------------------------------------------------------------------------------------------------------------------------------------------------------------------------------------------------------------------------------------------------------------------------------------------------------------------------------------------------------------------------------------------------------------------------------------------------------------------------------------------------------------------------------------------------------------------------------------------------------------------------------------------------------------------------------------------------------------------------------------------------------------------------------------------------------------------------------------------------------------------------------------------------------------------------------------------|
|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 <p>(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남도 및(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 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미 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 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됨)</li> </ul>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분양홍보관)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분양홍보관)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b>2019.10.23(수)</b></li> <li>확인방법</li> <li>-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b>APT2you 앱</b>에서 개별조회</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b>2019.11.04(월)~2019.11.06(수) 3일간, 10:00~16:00</b></li> <li>장소 : <b>김해시 삼계동 1545번지 삼계서희스타힐스 커뮤니티센터</b></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김해삼계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소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ghsstarhills1123)(https://cafe.naver.com/ghsstarhills1123)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 이용기간 | <b>2019.10.23(수) ~ 2019.11.04.(월) (11일간)</b> |                              |



|           |                                                                                                                  |                                                                                                                               |
|-----------|------------------------------------------------------------------------------------------------------------------|-------------------------------------------------------------------------------------------------------------------------------|
| 인터넷       |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br>-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br>-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서비스 종료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br>제공일시                                                                                                     |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br><br>2019.10.23(수) 13: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 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유형 |          | 서류              |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공통   | ○    |          | 계약금             | • 계약금(아파트, 발코니 확장 등)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 ○    |          | 주택공급신청서         | • 분양사무소 비치                                                                                                                 |
|      | ○    |          | 서약서             | • 특별공급 및 가점제 적용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분양사무소 비치)                                                                              |
|      | ○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r>(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제3자 대리인 접수 불가):'본인 발급용'에 한함<br>• 용도 : 아파트 계약용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일반공급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 ○        | 직계 존·비속 주민등록표초본 |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br>•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복무확인서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                                                       |

|                                   |   |                    |                                                                                                     |
|-----------------------------------|---|--------------------|-----------------------------------------------------------------------------------------------------|
|                                   |   | 인서                 | 는 경우                                                                                                |
|                                   | ○ | 장애인등록증             | •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한 경우<br>-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 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 중 신분확인서류로 같음)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br>(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무주택소명서류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당첨사실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 제3자 대리인 계약 시<br>(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 | 위임장                | • 분양사무소 비치(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대리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br>※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대리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 대리인 도장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경남은행 | 207-0016-8918-00 | 아시아신탁(주)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 101동 801호 홍길동의 경우 "101801홍길동"이라고 기재

## VI.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청약관련 유의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인 성명을 인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마이너스 옵션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

### ■ 발코니 옵션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발코니 선택이 불가

## ■ 분양사무소 관련 유의사항

- 분양사무소는 샘플하우스 내 시공부분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사무소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과 일부 상이 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공원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람,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분양사무소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유무,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상수도사업소, 종교시설, 공원, 공공공지, 유치원, 고가도로, 도로, 하천, 건물,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 및 철로가 인접하여 있으며, 차량기지는 경전철 유지보수를 위해 24시간 운영함으로 이로 인해 환경피해(소음, 야간 불빛 등)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 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부지 동측에 13M도로, 서측에 10M도로 및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 및 해반천, 남측에 18M도로, 북측에 13M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빛,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각종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의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 확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측사 등의 악취 냄새유발시설 등)을 확인하여 계약체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삼계초등학교 예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 도로 및 입접지와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내·외 레벨차에 의한 사면, 옹벽 구간은 세대별 조망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광장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홍보물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홍보물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녹지, 공공공지, 소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배치도(홍보물)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 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공공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공간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단지내 지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탑라이트(천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분진,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 등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각동 인근 생활폐기물분리보관시설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탑라이트 설치에 의한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D.A 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확장세대와 비확장 세대가 좌·우·상·하에 인접하는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창호 일부에 설치되는 자연형 환기 방식으로 시공됨. (별도의 기계식 환기 설비 미시공)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대피공간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 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등을 확인하기 바람,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지상에서 각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의 위치는 필로티 유무, 주동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아파트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 측면 로고가 설치되어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옥상 녹화시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지상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됨.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옥외시설물, 광장, 주차장진출입구, 차량 차단기, 어린이 승하차 구역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 지하에 제연환ลม 및 통신실(점검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입주민 보행자 동선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임.

※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시공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 구 분  | 공 지 내 용                                                                                                                                                                                                                                                                                                                                                                                                                                                                                                                                                                  |
|------|--------------------------------------------------------------------------------------------------------------------------------------------------------------------------------------------------------------------------------------------------------------------------------------------------------------------------------------------------------------------------------------------------------------------------------------------------------------------------------------------------------------------------------------------------------------------------|
| 101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측 단지외 도로(13M) 및 남측 단지외 도로(18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북측에 인접하여 단지 주출입구, 문주,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측 주동 하부 지하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차량진입로가 설치되어, 소음, 빛,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측에 근린생활시설 연결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냄새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02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측 단지외 도로(13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남측에 인접하여 단지 주출입구, 문주,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냄새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서측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03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측 단지외 도로(13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남서측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회차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04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측 및 남측 단지외 도로(13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서측에 경로당 및 휴게공간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05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측 단지외 도로(13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북서측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동측에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서측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우수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06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측 및 북측 단지외 도로(13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동측에 소공원이 인접하여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북서측에 인접하여 단지 부출입구,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서측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서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동측에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냄새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07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 단지외 도로(10M) 및 북측 단지외 도로(13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서측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및 철로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북동측에 인접하여 단지 부출입구,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동측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주민운동시설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서측에 공공공지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냄새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08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 단지외 도로(10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서측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및 철로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북동측에 인접하여 단지 부출입구,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측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서측에 공공공지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측에 지하층 연결을 위한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09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서측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및 철로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남동측에 경로당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10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에 인접하여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서측에 휴게공간 및 남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측에 경로당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11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 단지외 도로(10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서측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및 철로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남동측에 인접하여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측에 휴게공간 및 남동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측에 지하층 연결을 위한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서측에 단지외 보도와 연결을 위한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12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 단지외 도로(10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서측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및 철로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동측에 인접하여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하부 지하층에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지하층 연결을 위한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휴게공간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측에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동측에 잔디광장 및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동측에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단지외 보행자도로와 연결을 위한 옥외계단 및 남측에 단지내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13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 단지의 도로(10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서측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및 철로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북측에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휴게공간 및 남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동측에 잔디광장 및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동측에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단지내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14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 단지의 도로(10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서측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및 철로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남측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동측에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측에 지하층 연결을 위한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15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 단지의 도로(10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서측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및 철로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동측에 인접하여 단지 주출입구, 문주,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측에 단지외 보행자도로와 연결을 위한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116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 단지의 도로(10M) 및 남측 단지의 도로(18M)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서측 부산김해경전철차량기지 및 철로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북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북측에 단지외 보도와 연결을 위한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동측 동 하부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차량진입로가 설치되어, 소음, 빛, 분진, 배기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남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연결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2018.12.13.일부개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8.12.11.일부개정)에 의거함.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분양사무소는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

로 함.

- 일부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 당첨자는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과 (주)서희건설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은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홍보물,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주)서희건설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타사 또는 (주)서희건설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분양사무소 및 사용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진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김해삼계 지역주택조합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사무소와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 ■ 세대 / 규격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

- 분양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곱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주)서희건설이 시공하므로 제곱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Ⅷ. 기타사항

■ 입주예정일 : 2019년 11월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 회의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항 목             | 적용 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가. 의무사항 이행여부 검토 |       |                                                                                                                                |
| ① 고기밀 창호        |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이상                                                                                                 |
| ② 고효율기자재        | 적용    |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br>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br>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 ③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및 대기전력전동 차단 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1개소)설치                                                                             |
| ④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 (1EA)                                                                                                              |
| ⑤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br>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
| ⑥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보육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⑦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단위세대 내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
| ⑧ 절수설비          | 적용    |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내진능력****VII-0.182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구 분  | 건축/토목/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
| 회사명  |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삼진탐테크 엔지니어링 | 현대공영(주)     |
| 감리금액 | 2,663,307,900      | 741,819,745    | 470,0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자금관리자                                     |
|---------------------|-----------------------------|----------------------------|-------------------------------------------|
| 상 호                 |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                 | (주)서희건설                    | 아시아신탱(주)                                  |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6번길 34, 3층(삼정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4층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br>(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
| 법인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513-66-00050)              | (220-81-19330)             | (120-87-07104)                            |

■ 분양사무소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545번지 삼계 서희스타힐스 커뮤니티센터

■ 분양문의 : [055-314-0540](tel:055-314-054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